

광주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6가단5297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담당변호사 오수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김하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생환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7.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286,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3. 피고의 배우자인 C와 사이에 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5.부터 2016. 8. 20.까지 경추간판핵탈출증, 근막증후군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총 입원일수 1,787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의료비, 입원일당 및 간병비로 합계 194,459,1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상하는 손해의 조건은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총 입원일수 1,787일 중 771일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입원에 해당하여 약관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입원치료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총액은 82,286,108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입원이 입원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는 과잉 입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원기간의 적정성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환자의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 처치 및 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의 입원은 담당 의사들이 직접 피고를 면담, 진찰한 후에 의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결정한 것으로,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강력히 입원을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들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E협회 의료감정원은 피고에게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감정하였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해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입원의 필요성 내지 적정성을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한 별지 기재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입원기간보다 적은 기간의 입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는 “2009. 4. 1.부터 2014. 6. 30.까지 허위 또는 과잉 입원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8,519,391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0. 16. 피고에 대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피고에 대한 일부 입원내역이 적정 입원일수보다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상당 입원내역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불필요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별 지]

E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적정 입원기간(일)
1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35	21
2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8	8
3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38	자료부족
4	병원	기타추간판장애	17	7
5	병원	무릎관절증	41	14
6	병원	무릎관절증	23	14
7	병원	무릎관절증	76	14

8	병원	무릎관절증	54	14
9	병원	무릎관절증	15	7
10	병원	무릎관절증	14	7
11	병원	무릎관절증	9	7
12	병원	무릎관절증	14	7
13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8	7
14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4	7
15	의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4	7
16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4	14(낙상)
17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32	14
18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4	14
19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7	14(운동상)
20	병원	허리뼈뒤통관인대의 염좌	16	7
21	병원	본태성고혈압	48	7
22	병원	본태성고혈압	29	7
23	병원	본태성고혈압	21	7
24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0	10
25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4	7
26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4	7(자료제한)
27	외과	기타추간관장애	14	14
28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5	15
29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3	13
30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43	7
31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3	7
32	병원	기타추간관장애	19	7
33	병원	알개의 기타질환	14	7
34	병원	알개의 기타질환	28	7
35	병원	폐통	9	9
36	병원	폐통	10	7
37	병원	폐통	14	7
38	병원	폐통	10	7
39	의원	폐통	15	15
40	병원	폐통	15	7
41		폐통	21	자료부족
42	병원	폐통	14	7
43	의원	폐통	12	12
44	의원	폐통	18	7
45	의원	폐통	15	7
46	의원	폐통	20	자료부족
47	병원	폐통	14	14
48	병원	폐통	14	14
49	병원	폐통	41	14
50	병원	폐통	8	8
51	병원	폐통	26	7
52	병원	폐통	10	10
53	병원	폐통	22	자료부족
54	병원	폐통, 경추간관전위, 유방암성신생물	15	15
55	병원	폐통	15	15
56		폐통	19	14
57	병원	폐통	18	14

58	의원	배동	15	15
59	병원	요추및기타추간관장애,경추염좌	34	34(교통사고)
60		배동	18	7
61	병원	어깨병변, 근막통증증후군	15	15
62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22	22(낙상)
63	병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4	14
64	병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8	7
65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4	7
66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5	7
67	의원	요추골절,골반의 타박상	19	7
68	의원	양쪽입자성부틀림결정,어깨관절동	12	7
69	의원	양쪽입자성부틀림결정,어깨관절동	13	7
70	병원	양쪽입자성부틀림결정,어깨관절동	19	7
71	병원	양쪽입자성부틀림결정,어깨관절동	22	7
72	의원	양쪽입자성부틀림결정,어깨관절동	15	7
73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20	7
74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15	7
75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	4
76	의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14	7
77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0	40(요추수술)
78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42	21
79	병원	신경뿌리병증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추부	21	14
80	병원	경추간관장애	41	14
81	병원	경추간관장애	27	7
82	병원	경추간관장애	125	자료부족
83	병원	척추증, 부틀림결정	20	7
합계			1,787	834